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5. 3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6. 1.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수용 행복농촌과장]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북상면 월성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에 태양광을 설치코자 함.
- 주요내용

위치	면적 (m ²)	설치 (m ²)	설치용량 (kW)	사용허가신청자	비고
북상면 월성리 1084-4 (자연체험학습 관 옥상)	4,956	86	18.06	달빛고운영농조 합법인 대표 정종인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건물옥상에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조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4-4(지목 : 대지)



현장사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북상면 월성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 받은 재산관리관은 관련 법령내용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공유재산 부지에 대한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은 관련 법규에 근거한 조건완비로 영구시설물 축조와 사용수익·허가는 동의함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에너지관련 법령,조례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

의 사 일 정

【제25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6. 25.(금)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제2차 본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1~2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3
4.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위원회 : 4~17
5.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14.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6.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 : 18~21
1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산 회】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